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7. (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93호)
- 나. 회부일자: 2024. 5. 2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6. 5.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석우 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2) 설치목적 :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3) 설치연도 : 1999. 1. 16.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성북구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시행 및 포장도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
- 주민생활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기금예치를 통한 수익 및 효율성 증대

다. 2024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1,682,501	1,856,367	173,866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변경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682,501	1,856,367	173,866	
예치금회수	706,004	879,870	173,866	(증)23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부담금	950,000	950,000	-	
이자수입	26,497	26,497	-	

○ 지출계획변경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1,682,501	1,856,367	173,866	
인건비	44,776	44,776	-	
일반운영비	23,794	23,794	-	
시설비	1,005,000	1,005,000	-	
예치금	598,931	772,797	173,866	(증)연도말 기금조성액
반환금기타	10,000	10,000	-	

3)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조 성 액		사 용 액		2024년말 조성액(잔액)
1,856,367	-	1,083,570	=	772,797
· 예치금 : 879,870 · 부담금 : 950,000 · 이 자 : 26,497		· 인 건 비 : 44,776 · 심의수당 등 : 23,794 · 시 설 비 : 1,005,000 · 예 비 비 : 10,000		2025년도 이월

3.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 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을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예치금이 기정 예산 7억600만원 보다 24.6%인 1억7,386만원 증액된 8억7,987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3조²⁾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 업무,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등 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27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00호)

나. 회부일자: 2024. 5. 28.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6.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가. 제안이유

-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
- 2)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 3) 설치연도 : 2023. 7. 13.
- 4)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 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나.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

1) 운용계획 변경 사유 :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증 37,848원)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모금액 12,000천원보다 37,848천원 증액모금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32,381천원	70,229천원	37,848천원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2024년 수입계획				2024년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32,381	70,229	37,848	합 계	32,381	70,229	37,848
전입금	-	-	-	비용자성사업비	-	-	-
보조금	-	-	-	용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용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2,064	49,912	37,848	예치금	32,381	70,229	37,848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317	317	-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20,000	20,000	-	기타지출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1조(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고향 사랑기금의 설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고향사랑기금)

4. 검토의견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³⁾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당초계획 지출액 3,238만원보다 116.9%인 3,784만원이 증액된 7,022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⁴⁾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률」 제4조제1항⁵⁾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3.]

- 5)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